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조경태·조정훈·곽규택

이헌승 · 정성국 · 박수영

구자근 • 윤상현 • 박성민

김대식 · 서지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대면 홍보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.

또한, 응답률이 매우 낮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표·보도되었으나 실제 여론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선거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문제 가 되고 있음.

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08조제1항 등).
- 나.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함(안 제108조제11 항제3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제1항 중 "公表하거나"를 "공표 또는 홍보하거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 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

제256조제1항제5호 중 "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·권유·유도한 자"를 "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·권유·유도한 자,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한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파목 중 "공표 또는"을 "공표 또는 홍보하거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론조사 결과의 공표·홍보 또는 보도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 108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8조(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	제108조(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		
지 등)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	지 등) ①		
6일부터 選擧日의 投票마감시			
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			
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			
하게 하는 여론조사(模擬投票			
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			
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			
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			
<u>나</u> 인용하여 報道할 수 없다.	<u>홍보하거나</u>		
② ~ ⑩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		
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	①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			
여서는 아니 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3.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		
	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		
	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		
	용하여 보도하는 행위		
① ~ ⑭ (생 략)	① ~ ⑭ (현행과 같음)		
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	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	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	
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			

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,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,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지시·권유·유도한 자, 같은 항제2호를 위반하여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·권유·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・보도한 자
- ② (생략)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.
-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
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 는 者
 가. ~ 타. (생 략)

 1. ~ 4. (현행과 같음)
o
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
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
권유ㆍ유도한 자, 같은 항 제
3호를 위반하여 응답률이 100
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
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
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한
자
②(色954 在日) ③
<i>3</i>)
1
가 ~ 타 <i>(</i> 혀해과 간은)

파.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 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, 같은 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,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 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,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 사를 한 자

平				
	공표	또는	홍보하	거나
		_		
			1 =1 ¢ /	
하. ∼	녀. (연행과	나 같음)	
2. ~ 4.	(현행	과 같	음)	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하. ~ 너. (생 략)

2. ~ 4. (생략)

④ • ⑤ (생 략)